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4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선정 대리인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,
- 2020. 3. 2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 시행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(안 제7조).
-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 신설(안 제7조의2).
- 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 신설(안 제7조의3).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3. 20. ~ 2020. 3. 30. (1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7조의2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‘청구등’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‘청구인등’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‘선정대리인’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

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청구등을 대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공정조세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정조세과장 김복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팀장 박성규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송진숙 (행정 219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 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</p> <p>제7조의2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‘청구등’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‘청구인등’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‘선정대리인’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</p>

<신 설>

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

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

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청구등을 대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생략)

제8조(현행 제7조와 같음)